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종합건설(주) 청소원이 청소하는 도중 갑자기 쓰러져
상병명 “뇌경색(의증)”이 발생한 경우

(88-354호 88. 11. 21.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경북 영일군 오천읍 원동
성명 : 허 ○ ○
소속 : ○○종합건설주식회사
원 처 분 을 받은 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건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허○○(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8.6자 청

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88.6.24. 청소하던중 갑자기 쓰러져 포항성모병원으로 후송하여 상병명 “뇌경색(의증)”으로 진단되어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 3에

의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근무형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격하거나 정밀을 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병명 또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업무중 과로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11.2. 허○○)
2. 원처분청 의견서(1988.11.4.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9.28. 오○○)
4. 초진 소견서 사본(1988.6.29. 포항성모병원장)
5. 자문의 소견서 사본(1988. 임○○)
6. 상병조회에 대한 회신 사본(1988. 포항성모병원장)
7. 진료소견서 사본(1988.10.9. 문○○ 신경외과의원장)
8. 사실증명서 및 자술서(1988.10. 김○○, 김○○)
9. 문답서 사본(최○○, 손○○, 신○○)
10.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속 청소원으로서 1987. 11월부터 사고일인 1988. 6.24.까지 포항인덕아파트 현장사무실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는바 동일 05:30경 청소하는 도중 갑자기 쓰러져 포항성모병원으로 후송하였는바 상병명 “뇌경색(의증)”으로 진단되자 원처분청

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재전 수일간은 아파트공사 완료일이 임박하여 아파트내부에 들어가 타일청소 및 쓰레기등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느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의자에 올라가 유리창 청소를 하다 의자가 미끄러지면서 재해를 당했으며 업무 수행중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요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근무형태가 현장 사무실 청소원으로서 05:00에 출근하여 50평정도 되는 현장 사무실, 감독실, 화장실등의 책, 걸상 정리정돈, 바닥 청소, 유리창 청소등을 하다가 현장내 구내식당에서 07:30경 아침 식사후 청소작업을 마무리하면 오전 11:00경이 되며 이상과 같은 작업을 오후에 한번 더 한후 오후 4시경에 퇴근하는 것이 “최○○”와 “신○○” 문답서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근무형태가 육체적으로 과격하거나 정신적으로 정밀을 요하는 작업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재전 수일간 공사완료 관계로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타일 청소등 과격한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동 현장 식당 조리원 “최○○”와 동 회사 대리 “신○○”의 문답서상 재해발생전일이나 그전 몇일도 계속 청소작업만 했으며 다른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으며,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1988.10.9. 문○○ 신경외과 의원장 소견서를 보면 “피재자는 과거 병력이 없고 혈압이 정상이며 심한 노동이나 운동에는 별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설령 병명이 “뇌경색증”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의식 소실이 선행되면서 떨어진것이 아니라는 점은 넘어지면서 부딪힌 두부손상이 이 질병 유발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당시 넘어지면서 받은 두부손상이 없었더라면 일생동안 별지장 없이 살아가갈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으로서 청구인이 유리창 청소를 하다 넘어져 두부를 다쳤다고 하나 포항성모병원 주치의의 상병조회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1) 재해자의 발병원인은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으나 뇌동맥의 혈류 공급부전으로 인한 것이고, 2) 래원당시 신체전반의 부상부위 및 정도는 양측 무릎의 가벼운 찰과상 정도이고, 3) 기초질병 혹은 기존질병 유무는 정확한것은 알 수 없으나, 뇌동맥경화증, 뇌혈관 자체의 비후, 또는 색전 유발의 소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서 두부의상에 대한 소견이 없으며, 원처분청자문의 소견은 “재해자의 평소의 업무내용이나 재해당시의 사항과 초진소견과 상병조회 내용등

으로 미루어 보아 재해가 업무의 재해로 사료됨”인바 이상의 피재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사항 그리고 의학적 소견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소작업도중 재해를 당했으므로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광업소 선산부가 작업중 부상을 입고 상병명 “1) 타박상 : 우측견갑부, 흉추부, 2)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기존증)”으로 요양중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요양신청한 경우

(88-169호 88.7.18.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충북청주시 봉명동 172-6
 성명 : 김 ○ ○
 소속 : ○○광업소
 원 처 분 을 받 은 자 주소 : 상 동
 성명 : “ ”
 소속 : “ ”
 원 처 분 청 :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건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5.9.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1987.6.10. 03:00경 보합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타박상 : 우측견갑부 흉추부, 2)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기존증)”으로 요양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원처분청에서는 상병명 1)인 “타박상 : 우측견갑부 흉추부”에 대해서만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여 1987.6.10.부터 현재까지 요양중 인자로서 청구인은 한양대부속병원에서 발급(1987.11.27. 자)한 진단서상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간”을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원처분청은 자문의 소견상 “재조사 결과 흉추 증상이 주이고 요추상병은 본 상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임으로 업무의 재해로 인정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현재 흉추 및 요추에 통증이 심하고 하체가 저리고 마비되는 상태이므로 한양대부속병원의 특진 소견을 인정해야 한다고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추가 요양이 의학상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6.7. 김○○)
2. 원처분청 의견서(1988.6.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5.9. 심사관 김○○)
4. 조사복명서 사본(1988.2. 행정서기 김○○)
5. 진정서 사본(1987.8.24. 김○○)
6. 진정처리 결과통보서 사본(1988.2.15.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7. 소견서 사본(1987.6.10. 고한성심의원장)
8. 소견서 사본(1988.1.22. ")
9. 진단서 사본(1987.11.27. 한양대학부속병원장)
10. 진단서 사본(1987.9.12. 강원도 영월의료원장)
11. 초진 소견서 사본(1988.3.17. 청주병원장)
12. 업무상 질환여부(의학적)감정서(1988.4.15. 한강성심병원 의사 길○○)
13.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근로자

로서 1987.6.10. 03:00경 보항작업중 피재되었다고 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1987.11.27.자 한양대학부속병원 진단서를 첨부 또다시 추가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원처분청에서는 제1차 진정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상병명 “1) 타박상:우측경갑부, 흉추부”로 요양승인 현재 요양증이고 제2차 진정에 의한 추가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간”(한양대학부속병원 발행진단서)에 대하여는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상 재조사 결과 흉추 증상이 주이고 요추상병은 본상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임으로 추가 요양 불승인 처분되었던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은 최초 요양한 고한성심병원장 및 한양대학부속병원장, 청주병원장, 원처분청 자문의간의 소견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3의 료기관인 한림대학부속 한강성심병원(의사 길○○)에 업무상 질환 여부(의학적)감정을 의뢰한바 그 종합감정의견상 “재해자는 초진소견:우측 경갑부 흉부 타박상,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기존증)으로 요양중 1987.11.27. 한양대학병원에서 진단결과 제 4,5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추가 요양 신청한바 있어 한양대학병원 및 청주병원에서 촬영한 필름의 한강성심병원에서의 소견은 제 4,5요추간 추간원판이 비만성 팽윤 소견을 보이며 추간판의 탈출 소견은 없다는 소견임. 따라서 청구인의 제 4,5요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인 업무 기인성이 없음”임이다.

이상 각 소견은 종합하여 판단할때 청구인의 추가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간”은 의학적으로 이를 업무상으로 인정할만한 거증이 희박할뿐 아니라 제3의료기관의 감정소견에도 “제 4,5요추간 추간원판이 비만성 팽윤소견을 보이며 추간판의 탈출 소견은 없다는 소견임”으로 이를 업무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가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